

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범기

전화 02-3219-4323 / 팩스 02-3219-4474

보도자료

2019. 6. 25.(화)

자료문의 : 금융조사제1부

전화: 02-3219-2430

팩스: 02-3219-2399

주책임자: 부장검사 오현철

제 목

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460억 원대 회사자금 유용한 기업사냥꾼 수사결과

-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(부장검사 오현철)는 2017. 7.경 코스닥에 상장된 ㄱ社를 무자본 인수한 후 약 460억 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기업사냥꾼 등을 수사하여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배임)죄 등으로 기소(구속 3명, 불구속 1명)하였음
 - ※ ㄱ社는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연 매출 775억 원, 순이익 55억 원 (2016년 기준)의 중견 회사였으나,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17년 4분기에만 172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, 2018. 11.경 상장폐지 의결('18. 12. 18. 1년간 개선기간 부여)
- 주범 A○○, B○○은 대여 또는 투자 명목으로 ㄱ社의 자금을 빼돌려 A○○가 2016. 4.경 무자본 인수한 상장사 ㄴ社에 90억 원, B○○가 2016. 6.경 무자본 인수한 상장사 ㄷ社에 111억 원을 부당 지원하는 한편, 2017. 11.경 상장사 ㄹ社를 인수한 후 ㄹ社의 자금 등을 이용하여 대기업의 자회사였던 ㅁ社를 인수함으로써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4개, 비상장사 1개를 지배하였음
 - ※ 위와 같이 무자본으로 인수된 회사들은 상장폐지 의결(개선기간 부여), 관리종목 지정, 수백억원의 누적손실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 발생
- 본건은 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차례로 인수한 후 회사 자금을 유출하여 상장폐지 등의 위험에 빠뜨린 사례임

1

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 * 피고인별 처분내용 별첨

1] 피고인

- A○○ [50세, 구속, ㄱ社 실운영자(회장)]
- B○○ [49세, 구속, ㄱ社 실운영자(부회장)]
- C○○ [60세, 구속, ㄱ社 경영지배인]
- D○○ [50세, 불구속, ㄱ社 부사장]

2] 주요 공소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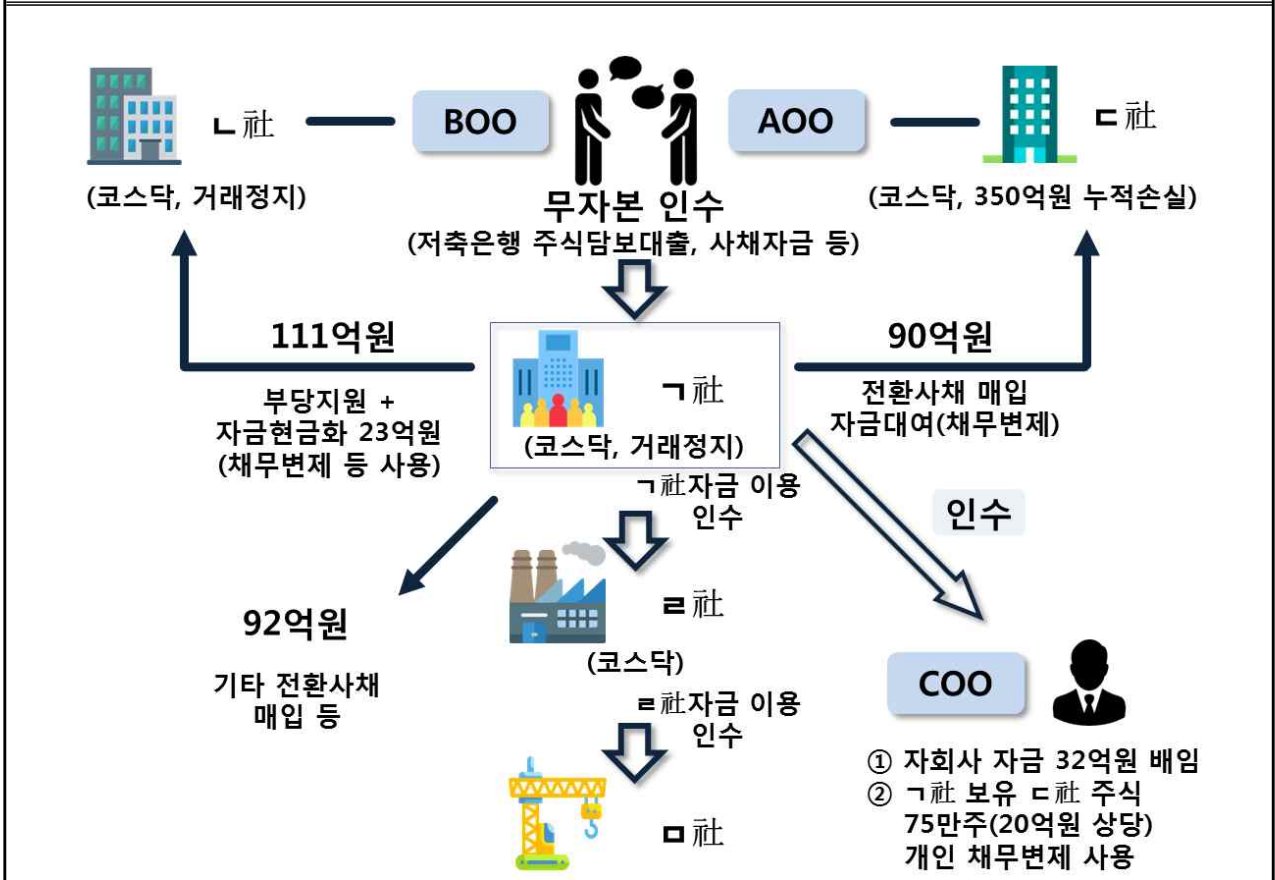
가. 기업사냥꾼 A○○, B○○ 및 ㄱ社 부사장 D○○의 범행

- 2017. 7.경 ㄱ社를 무자본 인수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합계 414억 원의 회사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하거나 투자금 회수방안 없이 투자 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**
- 2017. 10.경 ㄱ社의 주가가 하락하자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 약 280억 원 상당이 반대매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‘ㄱ社가 보유한 수소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고감도 수소 감지센서 등을 출시할 것’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 취득 **[자본시장법위반(사기적 부정거래)]**

나. ㄱ社 후임 경영인 C○○의 범행

- A○○, B○○으로부터 ㄱ社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8. 10.경부터 2018. 12.경까지 28회에 걸쳐 ㄱ社의 자회사인 ㄷ社의 자금 약 32억 원을 본인이 지배하는 ㄹ社 등에 부당 대여 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**
- 2019. 1.경부터 2019. 2.경까지 2회에 걸쳐 ㄱ社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상당의 ㄷ社의 주식 75만주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등으로 임의 사용 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**

<무자본 M&A를 이용한 기업사냥 사건 개요>



2

주요 수사경과

- 2018. 9. 17. G社 임직원들의 고발장 접수
- 2018. 11. ~ G社 등 압수수색, 계좌추적 등 실시
- 2019. 4. 15. B○○ 구속
- ※ B○○은 '19. 3. 22.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, 경남 거제에서 중국 산동으로 밀항 시도 중 '19. 4. 14.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체포됨
- 2019. 4. 20. C○○ 구속
- 2019. 5. 3. C○○, B○○ 구속 기소
- 2019. 6. 12. A○○ 구속
- 2019. 6. 25. A○○ 구속 기소, D○○ 불구속 기소

① 코스닥 시장의 무자본 기업사냥 실태 확인

- 금번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본건 전후에도 여러 건의 무자본 기업인수에 직·간접적으로 가담하는 등 기업사냥꾼들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¹⁾
 - A○○, B○○은 저축은행 대출 311억 원, 차입 145억 원, 일명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127억 원 등으로 ㄱ社の 지분 42.98%를 583억 원에 무자본 인수한 것으로 확인됨
 - 일부 언론에서 'B○○ 등이 ㄱ社 및 대기업의 자회사였던 ㄹ社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자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'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으나, 위 종교단체의 자금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회사와 종교단체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
- 피고인들은 수소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상장사(ㄱ社)를 무자본 인수하고, 위 상장사(ㄱ社)의 자금 등을 이용하여 다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또 다른 상장사(ㄷ社)를 인수하는 한편, 기존에 무자본 인수한 상장사(ㄴ社, ㄹ社)를 부당 지원하는 방법으로 4개의 상장사를 지배하였음

② 피고인들 관련 회사들의 거래정지 및 재무구조 악화

- 피고인들의 본건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ㄱ社は 2018. 11. 22.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었으나, ㄱ社の 이의신청으로 2018. 12. 18.부터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임

1) 구속 기소된 3명의 피고인들 중 2명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 확인

- B○○가 인수한 ㄴ社は 2018. 3.경 4회계년도 적자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, 2018년도 결산 후에도 5회계년도 적자를 사유로 **상장실질심사 대상**이 되어, 현재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임
 - A○○가 인수한 ㄷ社は 2018년도 결산 후 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어 4회계년도 적자에서 벗어나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지 않았지만,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**누적 순손실만 350억 원**에 이르는 상태임
-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하였고,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음

[별첨]

피고인별 처분내용

순번	피고인 (나이)	신분	주요 공소사실 요지[죄명]	처분
1	A○○ (50세)	ㄱ社 실운영자 (회장)	<p>△ B○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밀항브로커에게 밀항의 대가로 5,000만원을 지급하고, 2019. 4. 12.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고현항에서 중국 산동성으로 가는 선박에 승선하여 2019. 4. 13.경 대한민국의 영해를 벗어남 [밀항단속법위반] <p>△ A○○, B○○은 공모하여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7. 10.경 ㄱ社의 주가가 하락하자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 약 280억원 상당이 반대매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'ㄱ社가 수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곧 고감도 수소 감지센서 등을 출시할 것'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(사기적 부정거래)] · 2018. 1. 25.경 페어퍼컴퍼니 등 명의를 이용하여 ㄱ社 발행의 전환사채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하고, 2018. 4. 13.경 丁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ㄱ社 발행의 전환사채 55억 원 상당을 인수하여 ㄱ社 발행주식 총수의 16%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대량보유보고의무 미이행 [자본시장법위반] 	6. 25. 구속 기소
2	B○○ (49세)	ㄱ社 실운영자 (부회장)	<p>△ A○○, B○○은 공모하여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7. 7.경 ㄱ社를 무자본 인수한 후 수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, 이들 페이퍼컴퍼니에 무담보로 대여하거나 투자금 회수방안 없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함께 414억원 상당의 ㄱ社 자금 유용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	5. 3. 구속 기소
3	D○○ (49세)	ㄱ社 부사장	<p>△ A○○, B○○, D○○은 공모하여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7. 7.경 ㄱ社를 무자본 인수한 후 수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, 이들 페이퍼컴퍼니에 무담보로 대여하거나 투자금 회수방안 없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함께 414억원 상당의 ㄱ社 자금 유용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	6. 25. 불구속 기소
4	C○○ (60세)	ㄱ社 경영지배인	<p>△ A○○, B○○으로부터 ㄱ社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8. 10.경부터 2018. 12.경까지 28회에 걸쳐 ㄱ社의 자회사인 ㄴ社의 자금 약 32억원을 본인이 지배하는 ㄹ社 등에 부당 대여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</p> <p>△ 2019. 1.경부터 2019. 2.경까지 2회에 걸쳐 ㄱ社가 보유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ㄷ社의 주식 75만주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등으로 제공하여 임의 사용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</p>	5. 3. 구속 기소 6. 25. 추가 기소